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서보영 의원 등 8명(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박종길, 박왕규, 김정희, 남현주, 김장관)
- 발의일자: 2024. 5. 30.(목)
- 회부일자: 2024. 5. 30.(목)
- 상정 및 의결: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 6. 11.)

2. 개정이유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스포츠클럽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스포츠클럽 회계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3조, 제15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5. 30. ~ 6. 10.)결과: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공공·학교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되고, 이에 따라 「생활체육진흥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용어의 뜻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지정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율을 각각 규정하였음.
- 또한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하는 등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스포츠클럽법」의 제정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사용료 감면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